





#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(안) 검토보고

동작구의회 최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(안)』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보고임

## I 조례개요

☐ **조례명**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

☐ **발의자** : 대표발의 최민규 의원

- 최민규 · 신희근 · 이봉준 · 김명기 · 김재열 · 전갑봉 · 서정택 · 김주은 · 김순희 · 강한옥 · 김현상 · 최정아(12명)

☐ **제안이유**

-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참석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,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☐ **주요내용**

- (안 제2조) 위원회 정의
  - 위원회 명칭을 불문하고 동작구 소관사무에 대해 자문, 조정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를 말함
- (안 제4조) 수당 지급 규정
  -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  - 별표에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기준을 규정함

<별표> 수당지급기준(제4조 관련)

구 분	단 위	금 액	비고
위원회 참석수당	일 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료 : 70,000원</li> <li>• 초 과 : 30,000원</li> </ul>	-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
위원회 서면수당	일 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본료 : 50,000원</li> <li>• 초 과 : 20,000원</li> </ul>	

○ (안 제5조) 여비 지급 규정

- 구의회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 위원회 의결 또는 공무로 출장할 때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를 따름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를 준용

II

**검토내용**

 **관련규정**

-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규는 없으며, 각 개별 조례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

 **위원회 수당 지급현황**

- 현재 총93개 위원회가 구성 중이며, 2015년 기준 140,273천원의 예산 편성
  - 위원은 총1,213명으로 수당 지급대상인 순수 민간인 위원은 683명
- 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 지급, 서면심의회 수당 지급기준은 위원회별 상이
  - '14년 기준 37개 위원회가 서면심의 개최, 이중 12개 위원회만 심사수당 지급
  - 수당은 참석 및 심사수당 구분없이 위원회 수당으로 포괄하여 편성하고 있음
  - 지급 금액은 참석수당은 기본 70,000원, 시간초과시 30,000만원을 지급하고, 심사수당은 위원회별로 50,000원 또는 70,000원을 상이하게 지급

## ☐ 타 자치단체 사례

- 서울시 사례 (※ 서울시 타 자치구 중 관련 조례 제정한 사례 없음)
  - 조례 제정은 되어 있으나 수당의 종류, 지급액 및 절차는 규칙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, 규칙 제정없이 <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>에 의거 지급
  - 참석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나, 심사 수당은 위원회별로 지급 여부 상이
- 충청북도 사례
  - 조례 제정이 되어 있으며 수당의 종류, 지급액 및 절차는 훈령(규정)으로 운영
  - 훈령(규정)상 심사수당은 심의자료의 페이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음
- 기타사례
  - 울산광역시 : 사이버 심의시 회당 기본료 50,000원, 서면수당 규정 없음
  - 춘 천 시 : 서면심의시 70,000원(상한금액)으로 규정

## ☐ 조례 제정에 따른 영향분석

- 구 행정에 미치는 영향
  - 각 위원회별 참석수당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나, 서면 심사수당의 경우 위원회별 수당 지급여부 및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중
  - 서면심사에 따른 심사수당 등에 대한 통일된 지급 기준이 마련될 경우 부서별 예산의 형평성있는 집행이 가능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
  - 각 위원회별 예산편성시 참석 및 서면심사 수당을 포함하여 편성하고 있어 추가 예산 소요 없이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지급이 가능함

### III

## 부서 검토의견

- 각 위원회별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 위원회 운영 수당에 대해 구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고자 함
  - 조례 제정시 서면수당이 추가되는 문제가 있으나 현재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이 가능하고, 위원회별 지급 기준을 통일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함
- 다만, 제정조례 조문(제4조관련 별표) 중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구 의견 제출

- 「위원회 서면수당」 → 「서면회의 심사수당」 으로 변경
  - 서면회의 개최시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 및 안전 검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심사수당으로 정정
- 서면 심사수당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므로 기본료만 지급

발 의 안				검 토 안			
<별표> 수당 지급기준(제4조관련)				<별표> 수당 지급기준(제4조 관련)			
구 분	단 위	금 액	비 고	구 분	단 위	금 액	비 고
위 원 회 참석수당	일 당	• 기본료 : 70,000원 • 초 과 : 30,000원	-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	위 원 회 참석수당	일 당	• 기본료 : 70,000원 • 초 과 : 30,000원	-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
위 원 회 서면수당	일 당	• 기본료 : 50,000원 • 초 과 : 20,000원		서면회의 심사수당	일 당	• 기본료 : 50,000원	

### IV

## 행정사항

- 조례 제정(안) 우리구 검토의견 구의회 제출 : '15. 10. 22(목) 까지